

의안
번호

3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06. 0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안향자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354호

다. 제출일자 : 2021. 05. 27.

라. 회부일자 : 2021. 05. 28.

2. 제안이유

-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교육시설의 설치·강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능정보화기본법」,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05. 28. ~ 2020. 06. 04.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 시행과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3. (생략)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2021. 4월 현재 성북구의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1만 7천 4백여명으로 이 중 11%인 1천 9백 30명이 시각장애인 임.

〈2021.4월 기준 성북구 장애인등록 현황〉

(단위: 명)

계	지적장애	지배성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언어	기타
17,475	1,107	227	7,789	1,780	1,930	2,559	794	655	168	466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근거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시각장애인 교육대상자 선정기준과 협력체계 구축,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 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